

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의연월일 : 2020. 10. 16.

제 의 자 : 의 장

☐ 선임시기 :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☐ 선임사유

-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아니한 서진부 의원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

☐ 선 임 안

위원회명	의원명
도시건설위원회	서진부

☐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: 제2조 ~ 제5조